

의안번호	2200917
의 퇴 인	구자근의원
회 답 일	2024. 8.2.
추계번호	24D1288

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가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¹⁾의 위로금 지급 등을 심의·의결하고, 6·25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26억 6,300만원, 2029년 935억 5,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400억 7,500만원(연평균 880억 1,5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4조)	3,304	3,376	3,447	3,520	3,594	17,240	3,448
위로금 지급 (안 제8조의2)	79,360	81,906	84,443	87,169	89,958	422,834	84,567
합 계	82,663	85,282	87,890	90,688	93,551	440,075	88,01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)	위원회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,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6·25전쟁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함	의무규정

1) 이 법 제2조(정의)

1. “전시납북자”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(군인을 제외한다)으로서 6·25전쟁 중(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)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.
2. “전시납북자가족”이란 납북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8조의2(위로금)	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	의무규정
3	안 제8조의3(의료지원금)	위원회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)	○	
2	안 제8조의2(위로금)	○	
3	안 제8조의3(의료지원금)	×	의료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자마다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달라 현시점에서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료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, 의료지원금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²⁾

2)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의료지원금 지급은 2009년 1건(1,611만원), 2017년 1건(약 585만원)이 있었고, 지급신청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(통일부 자료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자 수는 과거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피해자 및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심사·결정한 사람 수인 4,777명으로 하며, 추계 기간 동안 추가 납북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위원회의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·처리기간이 5년(2011~2015년)³⁾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도 5년간 이루어진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원회 운영(안 제4조)

- 개정안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대한 심사·결정,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등을 위한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재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- 과거에 운영되었던 위원회의 예산집행액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·운영비를 추계
 -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정부위원 5명(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경찰청장)과 위촉직인 민간위원 9명(전시납북자가족 3명, 전문가 6명)으로 구성⁴⁾
 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은 2개과 29명으로 운영되었으며, 사무국장은 통일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으로, 사무국 직원은 통일부, 행정안전부,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조사관으로 구성되었음

3) 위원회는 납북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를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, 신고접수 추이 및 납북피해 가족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고 마감기한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하여 약 5년간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·처리하였음

4) 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구성되어 2017년 6월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」를 편찬·공표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음

[표 2] 위원회 사무국 조직 구성 현황 (2017년 기준)

(단위: 명)

총원	고공단	4급	5급	6급	7급	기간제	전문관	조사관
29	1	2	3	1	1	3	4	14

자료: 통일부

-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연 평균 27억 500만원을 집행
- 위원회의 운영경비에는 인건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남북피해 기념관 건립,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,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운영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른 추계와 관련이 없어 제외
 - 위원회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, 운영비가 연평균 22억 5,100만원, 사업비는 연평균 4억 5,400만원을 집행함

[표 3] 위원회 연도별 결산 현황: 2011~201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연평균
운영비	2,475	2,236	2,378	2,585	2,332	1,499	2,251
전시납북 진상 및 실태조사	461	464	468	745	418	170	454
합계	2,936	2,700	2,846	3,330	2,750	1,669	2,705

주: 결산액 기준

자료: 통일부

-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위원회의 재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72억 4,000만원으로 추계
- 2011~2016년 위원회의 평균 예산집행액을 바탕으로 통계청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물가상승률⁵⁾을 적용

5) 통계청 물가상승률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%)	1.9	1.5	0.4	0.5	2.5	5.1	3.6	2.6	2.2	2.2	2.1	2.1	2.1

주: 2017~2023년까지는 통계청, 2024년 이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

[표 4] 위원회 운영 등 소요예산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위원회 및 사무국의 재설치·운영	3,304	3,376	3,447	3,520	3,594	17,2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위로금 지급(안 제8조의2)

- (대상자) 위로금 지급대상자 수는 위원회가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결정한 사람 수로 하며, 추계 기간 동안 추가 지급대상자는 없으며, 연평균 인원이 균등하게 위로금 지급을 신청한다고 가정
 - 통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1년 1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피해 사건 5,505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4,777명⁶⁾을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공식 결정
- (단가) 개정안은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므로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⁷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⁸⁾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에서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

6) 위원회는 전시 납북 관련 역대 95,456명의 통합명부를 근거로 납북자 피해규모를 “10만명 내외”로 잠정 추산하고 있음. 그 당시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 가족 결정은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을 위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 신청이었으므로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2명 이상의 인원보증만 충족이 되면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결정하였다고 함. 개정안과 같이 위로금 등 보상을 전제로 납북피해자 신청을 다시 받을 경우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요건의 강화 여부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인 납북피해자의 수가 4,777명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함. 다만,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가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심사결정한 4,777명을 비용추계 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 대상인 납북피해자로 가정

7)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피해위로금) ① 제2조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.

8)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피해위로금의 금액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- 남북피해자는 대부분 1950년에 납북되어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⁹⁾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, 남북피해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10%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최저임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⁰⁾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2025년부터 지급하게 될 월 최저임금액과 1인당 위로금은 다음과 같음

[표 5] 연도별 월 최저임금액 및 1인당 위로금액: 2025~2029년

(단위: 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최저임금액(시간급)(A)	10,030	10,352	10,684	11,028	11,381
월 최저임금액(B=A×209시간)	2,096,270	2,163,521	2,232,871	2,304,952	2,378,696
1인당 위로금액(B×36배)	83,012,292	85,675,425	88,421,701	91,276,102	94,196,359

주: 월 최저임금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하루 8시간, 주5일 및 유급 주휴 8시간 포함, 고용노동부 고시)을 곱하여 산출

- (추가재정소요) 위로금은 지급신청, 위원회 심의 및 지급결정 등을 고려할 때,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(2025년과 2026년에는 매년 956명, 2027년부터는 매년 955명)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남북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4,228억 3,400만원으로 예상됨

9) 유사사례에서 피해위로금은 월 최저임금액 36배(36개월, 3년)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(연 기준)을 곱한 금액을 지급. 본 추계에서 6·25전쟁 당시 납북된 남북피해자는 대부분 돌아오지 못해 납북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이 법 시행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
10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상승률

(2024년 7월 기준, 단위: 원,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최저임금(원, 시간당)	9,860	10,030	10,352	10,684	11,028	11,381
최저임금상승률(%)	2.5	1.7	3.2	3.2	3.2	3.2

[표 6] 위로금 지급액: 2025~2029년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위로금 지급대상 납북피해자 수(A, 명)	956	956	955	955	955	4,777
1인당 위로금 지급액(B, 만원)	8,301	8,568	8,842	9,128	9,420	
위로금 지급액(A×B, 백만원)	79,360	81,906	84,443	87,169	89,958	422,834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위로금 지급 등을 심의·의결하고, 위로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26억 6,300만원, 2029년 953억 5,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400억 7,500만원(연평균 880억 1,5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·운영	3,304	3,376	3,447	3,520	3,594	17,240	3,448
위로금 지급	79,360	81,906	84,443	87,169	89,958	422,834	84,567
합 계	82,663	85,282	87,890	90,688	93,551	440,075	88,01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